

제주지역 장애인권 현안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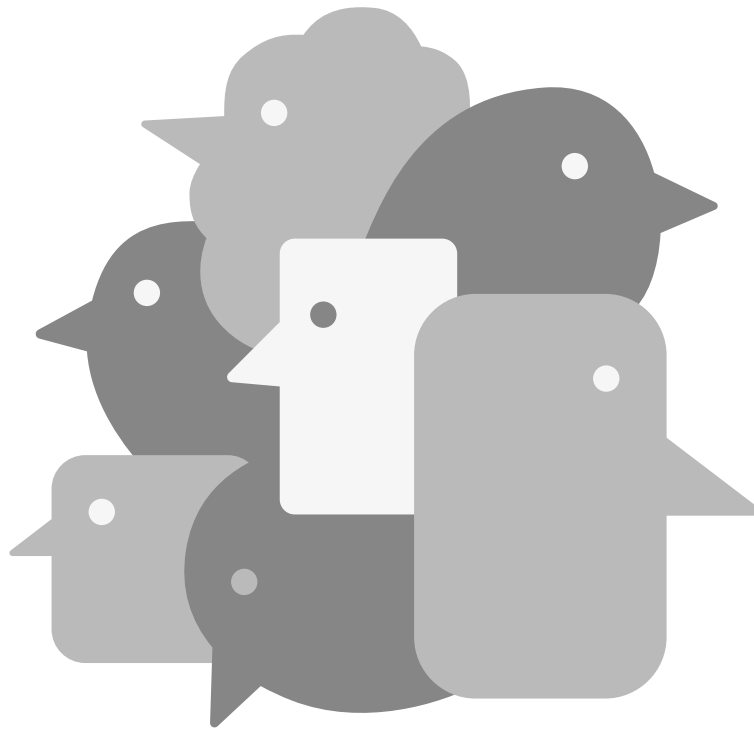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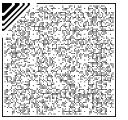
제주지역 장애인권 현안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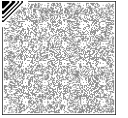


제주지역 장애인권 현안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목 차

토론회 일정 및 진행순서

인사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06
발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	11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사무총장	
발표 2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21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발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과제	35
	최희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3



토크콘서트 일정 및 순서

- **일시** : 2023. 4. 7.(금) 14:00 ~ 17:00
- **장소** : 제주흔디누림터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발달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구 분	일 정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식전공연 : 장애인밴드 공연, 장애인 스포츠댄스]
14:00 ~ 14:10	[개회식] 사회자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소장) [인사말]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독)
14:10 ~ 15:00	[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사회자 최혜령(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소장)
	[장차법 제정 추진 과정] -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前사무총장)
	[장차법 권리구제 기구 인권위의 성과]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장차법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과제] - 최희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15:10 ~ 15:20	[영상상영]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15:20 ~ 16:15	[2부 장애인 차별 없는 제주도를 위한 과제] - 사회자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소장)
	[패널 좌담] - 김경미(제주도의회 의원) - 고현수(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 고은실(한국발달장애인협회 회장) - 강인철(제주도청 복지가족국 국장) - 조백기(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6:20 ~ 16:50	[3부 참가자들과의 소통] - 사회자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소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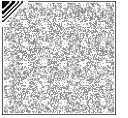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입니다.

오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5주년을 제주에서 기념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를 함께 준비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의 허유승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문상익 회장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상임대표님, 한국발달장애인협회 고은실 회장님, 한국신장애인협회 제주협회 김우찬 회장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김부찬 지부장님,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현수향 회장님 그리고 발표와 패널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률은, 300여개의 단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결합하여 이루어낸 투쟁의 산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정에 힘써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초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시혜와 배려의 언어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언어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권위는 사회 곳곳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왔고 오늘은 1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 절차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제와의 조화,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에 논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이후 15년의 새역사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특히 제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다른 지역을 선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규선**

제주지역장애인권 현안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

박옥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사무총장

발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엄형국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발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과제

최희순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발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前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야기

이 슬 러 K. 르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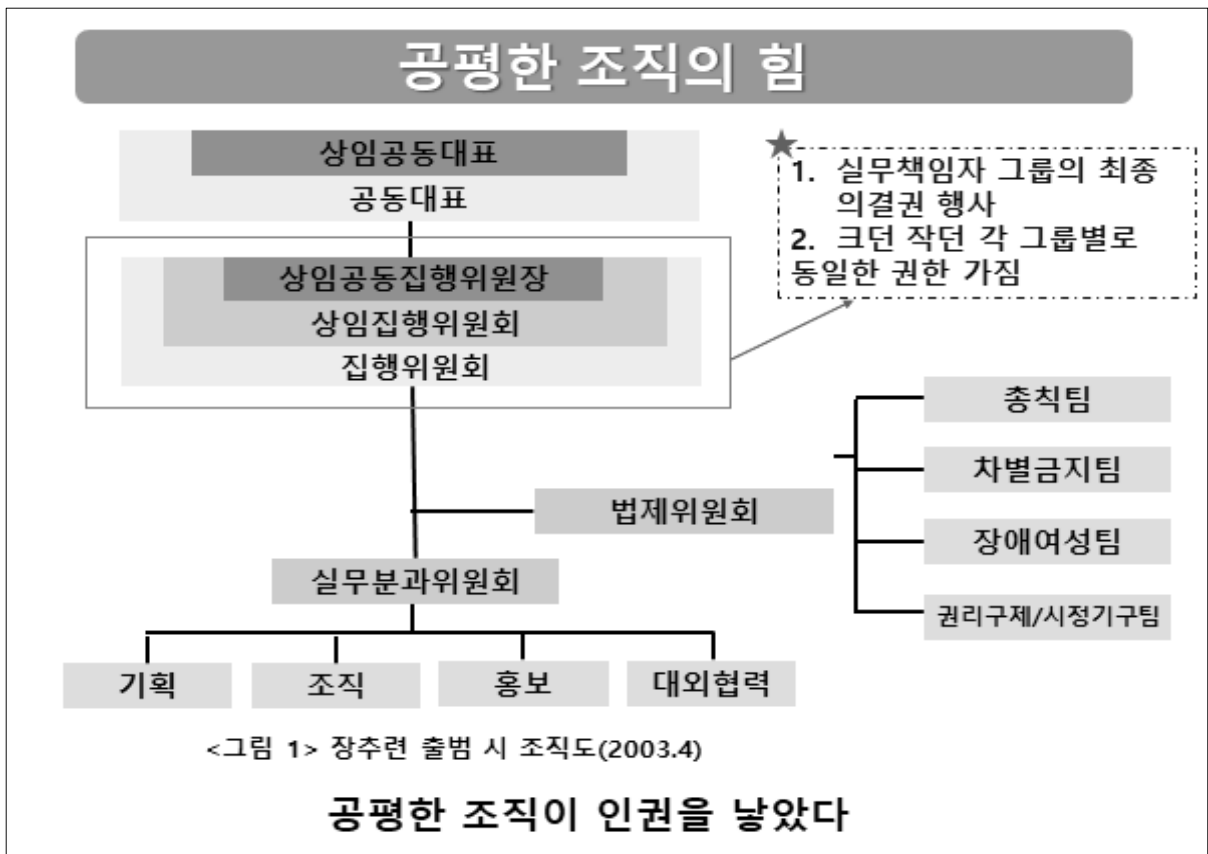
주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스스로를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 스스로가 원하는 변화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들의 영혼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매력적인 현재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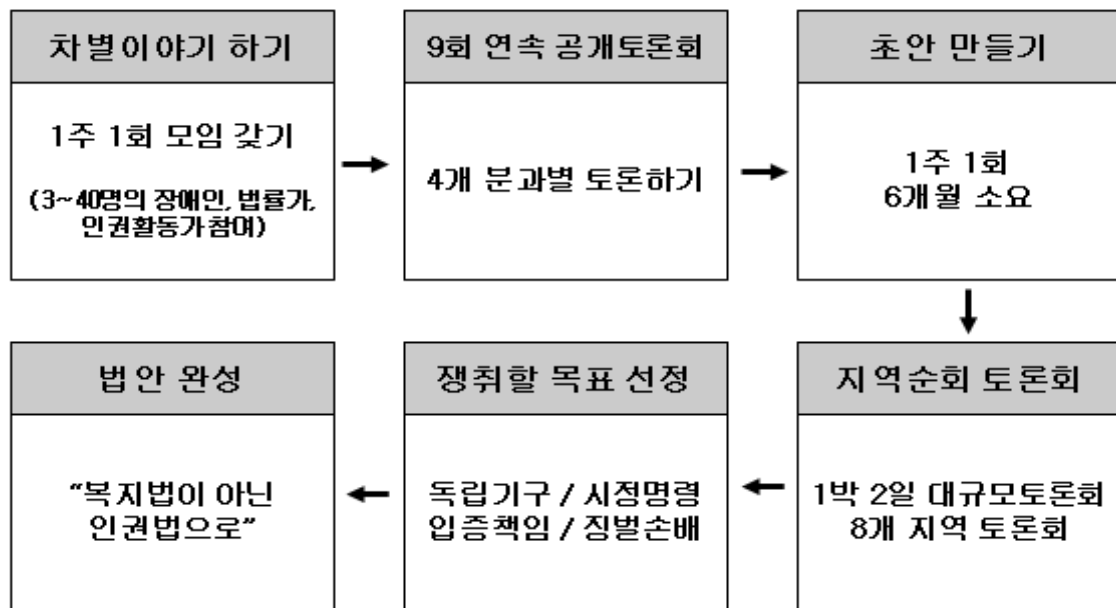


장추련 집행위원회

- 6개월에 걸친 조직 구성- 총 5개 영역
1:1:1:1:1
- 수많은 갈등과 불신, 반목을 해소할 수는 없어도
장애계의 열망, 모두 함께 더 이상 차별은 안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임

장추련 법제위원회

- 매주 1회 30-40명의 사람들이 만나 차별 경험을 이
야기하고 법률가들이 조문화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에 의한 다듬기
- 전국 순회 토론회로 법안 다듬기



<그림 3>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만들기 과정

장추련 조직

참여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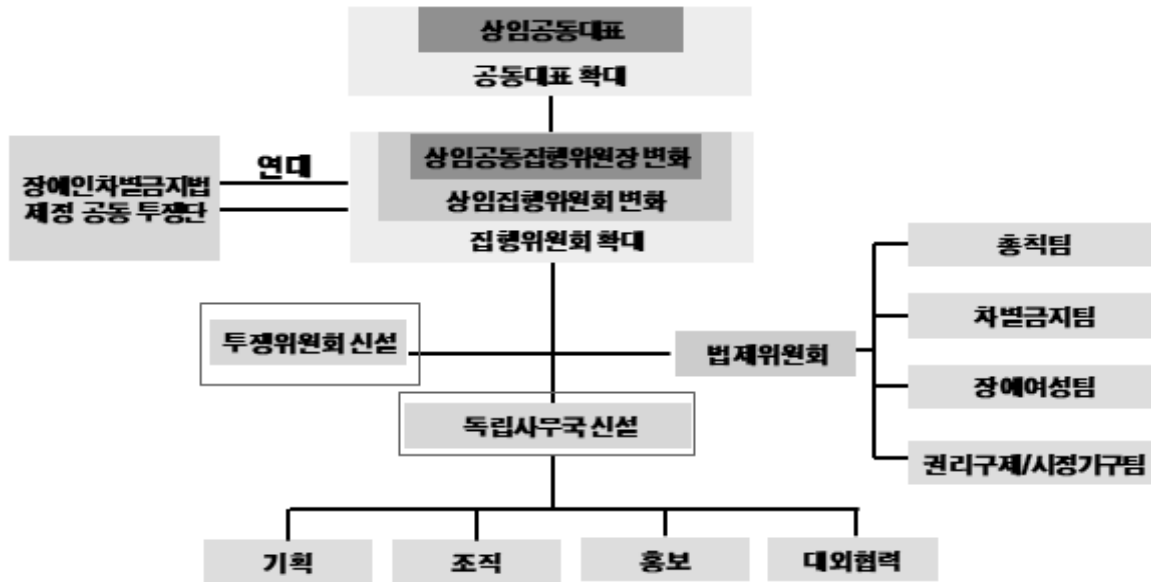
•장애여성 그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3개 단체)
•제3그룹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한국작은키모임, 장애여성문화공동체 (3개 단체)
•중증그룹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3개 단체)
•장총 그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개 단체)
•장총연 그룹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개 단체)
•법제정위원회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과 법률가
•실무분과위원회	장총 장총연 한국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직 개편 1차 : 싸우기 위한 조직개편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의 길을 내었다

싸우기 위한 1차 조직개편도



<그림 2> 소폭 변화된 장추련 조직도(2005.7~12월)

투쟁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길을 내었다

정부 입장

-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발표
-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열풍에 힘입어 보건 복지부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얼어붙음

장추련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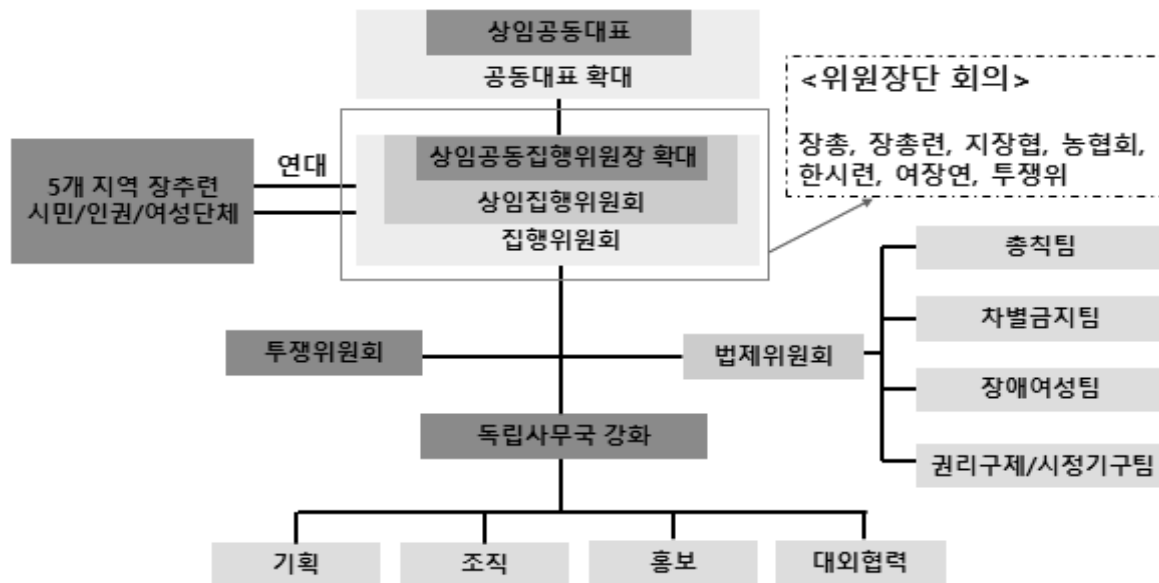
- 60일 동안 여의도와 청와대 앞 노숙농성 투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공약의 필요성 절감

“아무 대답 없는 권력을 향해 질기게 외칠 때 조 금이라도 움직인다.”

조직 개편 1차 : 싸우기 위한 조직개편

참여 단체	
•장애여성 그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제3그룹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작은키모임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중증그룹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장총 그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총연 그룹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화
•법제정위원회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과 법률가
•투쟁위원회	박경석위원장
•독립 사무국	김광이

2차 조직 개편 : 법 제정을 위한 조직개편



<그림 3> 확대 재편된 장추련 조직도(2007.3월)

권력에 맞서 잘 싸우려고 조직을 확장하고 연대했다.

2차 조직 개편 : 법 제정을 위한 조직개편

참여 단체	
•장애여성 그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제3그룹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한국작은키모임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중증그룹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
•장총 그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총연 그룹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법제정위원회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과 법률가
•투쟁위원회	박경석위원장
•위원장단회의	•지역장차연 •노동 시민 여성 인권단체 연대 확장
•독립사무국	박옥순 임소연 이현경 최순호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구성 - 정부 : 관계부처 국장
장애계 : 장추련 참여단체 대표 중심

팀장 - 차별시정 비서관

정부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옵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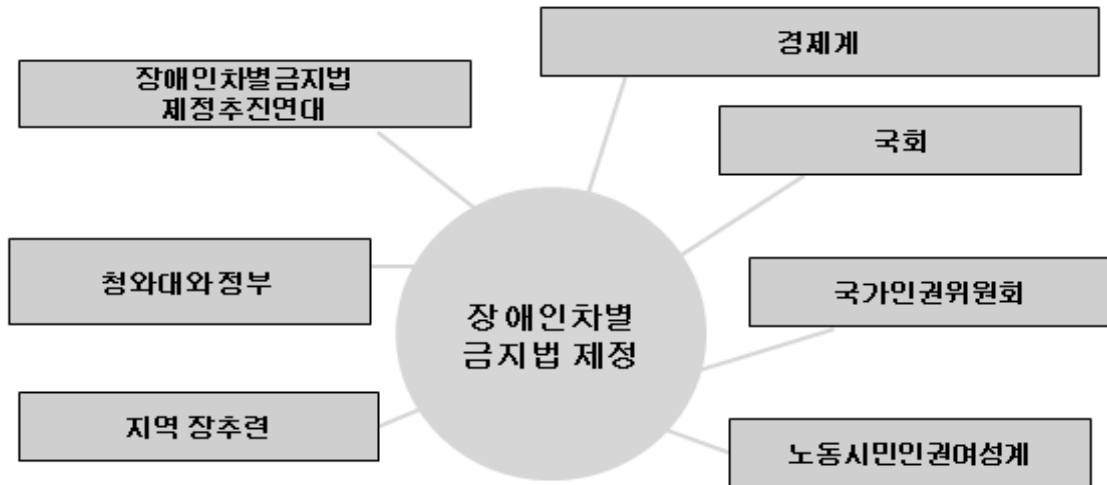
장애계(장추련)

중증장애인 대표
여성장애인 대표
제3그룹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연)
시각장애인 대표
청각장애인 대표
장추련 법제위원회

장애계 : 장추련 7개 그룹 및 장애전문가 그룹 참여

정부 : 차별위, 국조실 외 9개 부처 참여
인권위는 옵저버, 산업자원부도 필요에 따라 회의 참여

<장차법 제정 역학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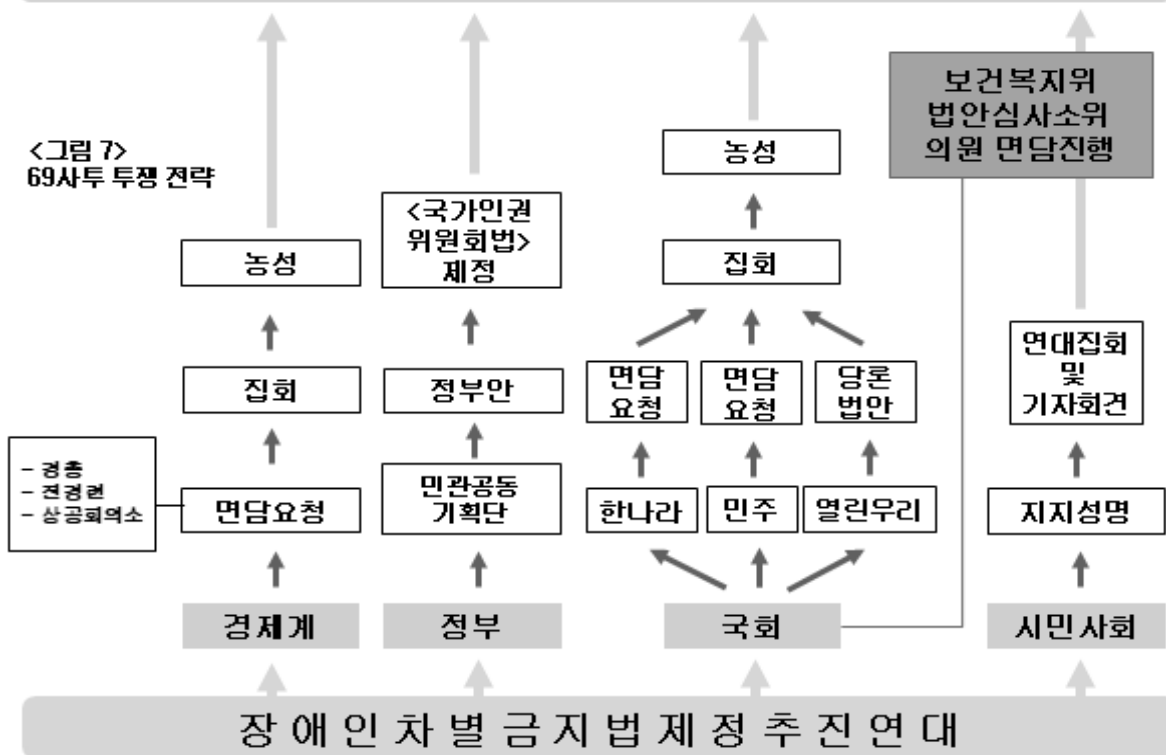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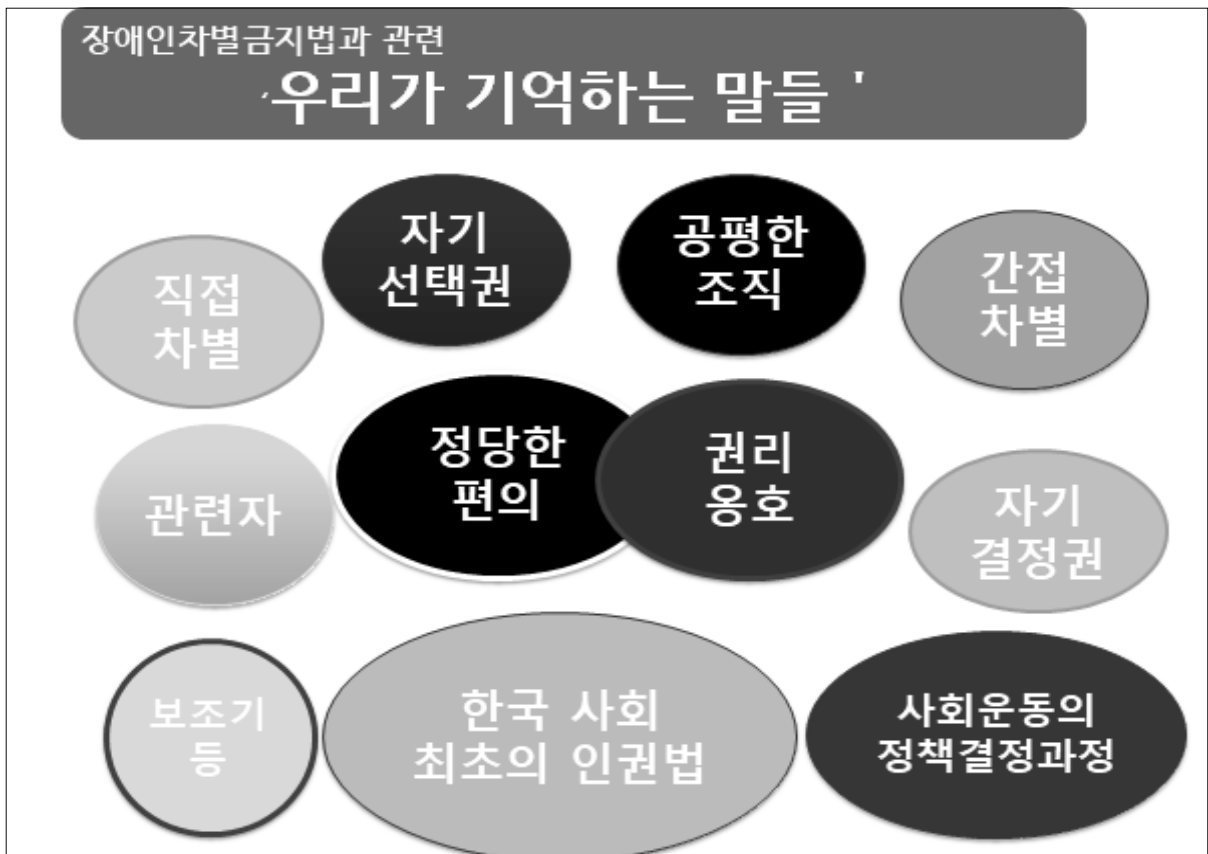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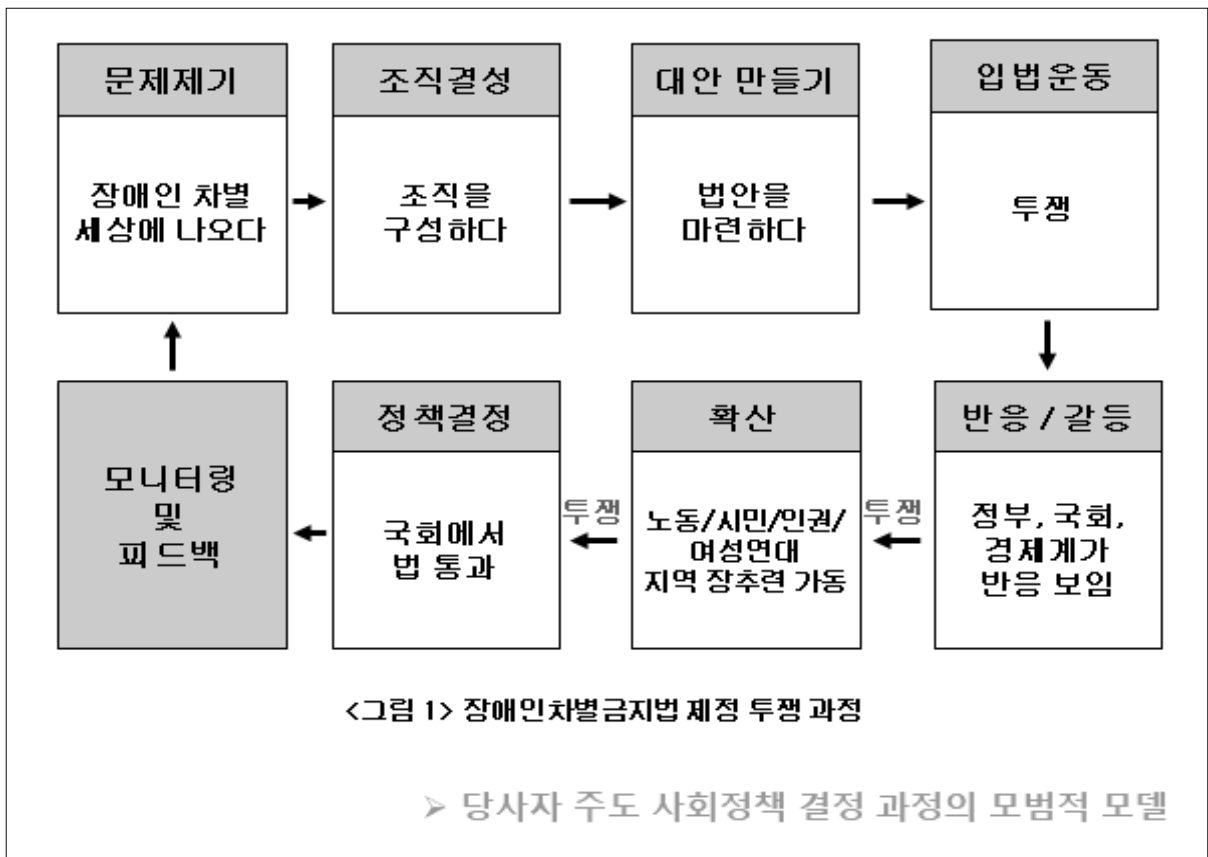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제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와 정부, 지역장추련, 노동시민여성인권계의 다양한 목표를 향한 역학관계 안에서 장추련이 끝내 법제정의 열망을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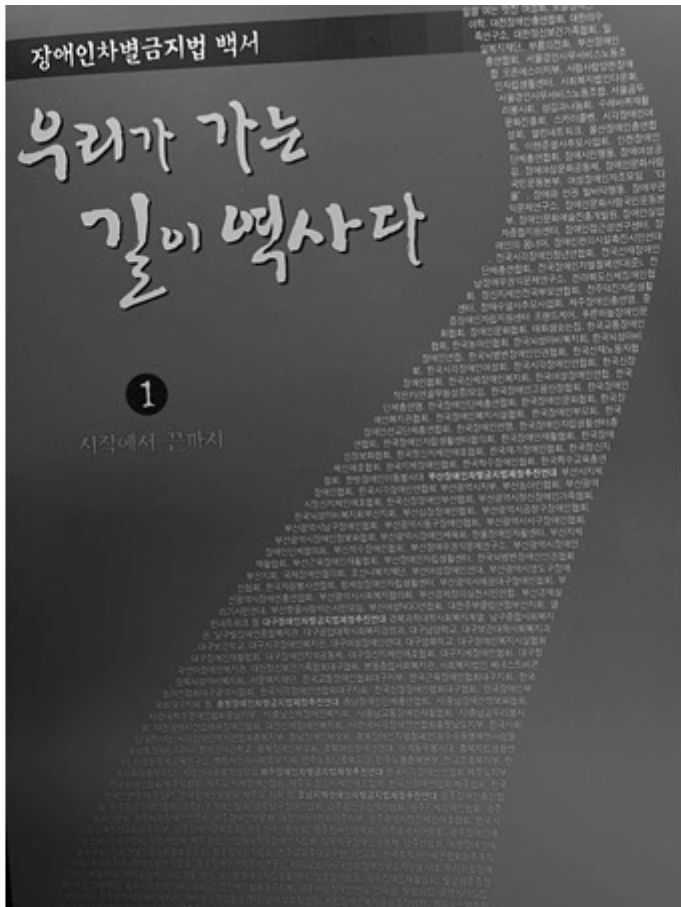
➤ 인권은 피를 먹고 자란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그림 7>
69사투 투쟁 전략







고맙습니다.

[발표2]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차별 해소에 기여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 가능?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 10조의 예외일 수 없음.
-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고 배제되어 왔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 가능?

-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 수행이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서는 1순위가 되어왔음.
- 장애를 이유로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고, 휠체어리프트를 목숨걸고 타야 했으며, 수사절차에서도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에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에 머무르는 것일 뿐, 당연한 권리 주체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였음.
-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이래 2023년 4월 시행 1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벌어지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여전히 장애차별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확고히 자리잡았음.
-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우에 장애인 당사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가 없고, 장차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법원 차별구제소송, 형사고소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장차법에 따른 권리구제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건수 – 16,672건(2008년 4월-2022년 12월)
- 법원 차별구제소송 제기 건수 – 29건(2008년 4월-2021년 12월)
- 형사처벌 건수 – 확인 불가(다만, 2018년 기준 형사소송에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인용된 건수 20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 직접차별 –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광고행위 –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 장애인 관련자 차별 –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를 차별하는 경우
- 괴롭힘 – 장애를 이유로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행동을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 지자체의 책임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
-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영역 규제내용

- 모집 및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및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거부 or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 차별 금지
-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의 변경 조정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 영역 규제내용

- 입학 거부, 전학 강요 금지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의무
- 수업,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내외 활동 차별금지
-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정보제공 의무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자 모욕 또는 비하 금지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면접, 추가서류 등 요구 금지
- 의무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영역 규제내용

-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물건, 서비스 제공금지
- 해당 재화용역 이용이익 박탈 금지
-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토지, 건물 매매 또는 임대 / 금융상품 및 서비스 / 시설물 접근 이용시 차별금지
-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 이용시 차별금지
-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이용, 접근시 차별금지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용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서비스 이용시 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
- 출판물 또는 영상물 제작시 동등한 접근 이용 제공할 노력의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서의 안전보장 의무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 접근 이용에서의 국가, 지자체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법행정영역 규제내용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 사법기관의 의사소통 장애 여부 확인 및 조력 제공의무
-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금지
-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조원의 배치, 선거정보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성권 및 성 규제내용

-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 차별금지
- 입양 자격 제한 금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애인 불이익 금지
-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여성 임신 출산 지원책 마련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규제내용

- 가정, 복지시설에서 의사결정과정 장애인 배제 금지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장애인 외모, 신체 노출 금지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거주 의 자유 제한 금지
-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에서의 불리한 대우 금지
- 가족 면접권, 외부와의 소통권, 친권포기각서 등 제한 금지
- 의료행위에 있어서 차별금지

17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에 의한 구제조치

- 임시조치 – 본안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
- 적극적 조치 등 판결 –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
- 간접강제 – 적극적 조치 판결시 이행기간 미이행시 일정 배상 명령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or 과실 없음을 입증
- 손해액의 추정 – 차별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 이익을 재산상 손해로 추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장소, 편의 제공의무
-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수용자의 구술 또는 면접을 통한 진정 접수 의무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및 용지, 봉투 비치 의무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관계자에 대한 진술청취,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함.
- 조사결과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유사한 차별행위 재발방지조치 등의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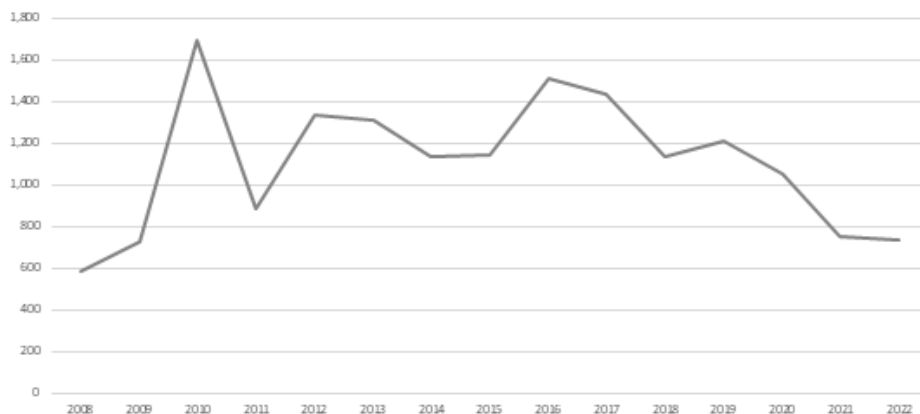
인권침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른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헌법 10조, 12조~22조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인권침해로 조사대상에 해당.
- 헌법 11조 평등권 침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성별, 종교 등 19가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한 때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됨.
- 평등권 침해는 인권침해와 달리 비교대상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교대상에 비해 불합리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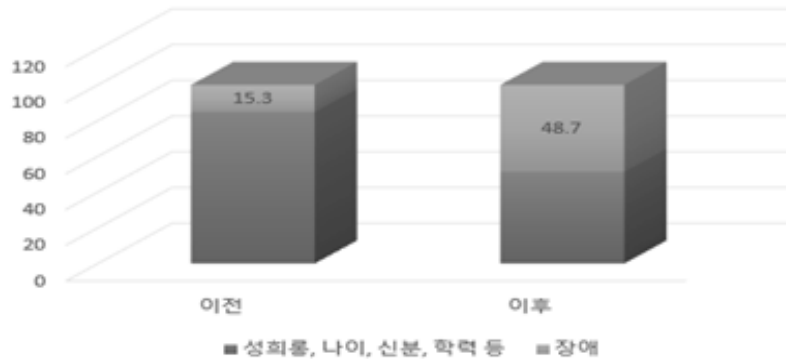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구제 성과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2008. 4.-2022. 12.)

접수년도	합계	2008 41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6,672	585	725	1,695	89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구분	접수기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8,526	100	21,201	55.0	17,325	45.0
장애인지원금지법 시행 이전	2011.3 - 2014.0	4,269	100	3,16	84.7	653	15.3
장애인지원금지법 시행 이후	2014.1 - 2022.3	34,257	100.0	17,585	51.3	16,672	48.7



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현황(2008.4. - 2022.12)

구분	합계	소계	조사대상						각하*	조사 중지	이송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합*	합의 종결**	조사종 해결**	기각 (차별아님, 시설아님)	기각			
합계	건수	16,399	9,416	5,563	830	5	446	4,282	3,853	6,903	20
	비율(%)	100	57.4	59.1	42.1	0.1	40.9	0.4			
고용	건수	1,046	499	228	45	0	50	133	271	541	3
	비율(%)	100	47.7	45.7	51.7	0.3	47.7	0.3			
교육	건수	1,495	588	379	53	0	45	281	209	904	0
	비율(%)	100	39.3	64.5	35.5	60.5	0.0	0.2			
재화·용역	건수	10,231	6,709	4,107	609	5	240	3,253	2,602	3,496	9
	비율(%)	100	65.6	61.2	38.8	34.2	0.1	0.2			
시범·행정 /심정권	건수	635	361	192	56	0	4	132	169	272	1
	비율(%)	100	56.9	53.2	46.8	42.8	0.2	0.2			
괴롭힘 등	건수	2,992	1,259	657	67	0	107	483	602	1,690	7
	비율(%)	100	42.1	52.2	47.8	56.5	0.2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고용

- 위원회는 00(주) 대표에게, 피전정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웹디자이너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2022. 6. 2. 결정)
-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2022. 4. 7.)
-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비원 채용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2023. 1. 3.)
- ✓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중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에 관해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교육

- 위원회는 재외한국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학을 거부한 사건에서 교육부장관 및 피진정학교장에게 장애 학생의 전, 입학에 거부하지 말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2021. 2. 1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재화 용역

- 위원회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주)CJ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2021. 7. 5. 결정)
- 위원회는 0000 월드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를 개정할 것,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22. 10. 26. 결정)
-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할 것, 00 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2022. 8. 22. 결정)
- 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중증지적장애인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병원 출입을 제한한 사건에서
 1. 00병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2022. 12. 19.)
 1.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장차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재화 용역

• 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에 대하여 0000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2021. 12. 23. 결정)

1.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 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2.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00지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안에서, 000000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00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2021. 12. 22. 결정)

• 위원회는 지체장애인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며 거부한 사안에서, 000000 사장 및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2022. 1. 8. 결정)

• 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공사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21. 7. 1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사법행정

- 위원회는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2022. 11. 30. 결정)
- 위원회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3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2020. 2. 10. 결정)
- 위원회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 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00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22. 12. 6. 결정)
- 위원회는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칙을 마련할 것,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술조력인 등 사법지원을 강화할 것,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고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2022. 10. 13. 결정)
-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2022. 2. 22.)
-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000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2021. 8. 2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성과 - 장애인거주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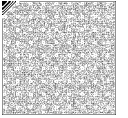
• 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00000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 등을 고발조치하고, 00시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시설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개선방안 등을 권고(2022. 8.

9. 결정)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과 종사자를 형법상 학대죄, 감금죄, 장차법상 괴롭힘조항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3. 피진정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순노동을 폐지하고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시설 이용자에게 예배참석, 헌금 등 종교행사 참여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 위원회는 00마을 주민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고 000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을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00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2021. 11. 3. 결정)

감사합니다.



[발표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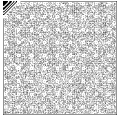
최희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2007. 4. 10.) 및 시행(2008. 4. 11.)된 지 15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법의 형태로 정리하고 차별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장애인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분리·배제·제한·거부 또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차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된 것은 장애인 차별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습득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삶을 이어가기란 결코 녹록치 않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 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고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 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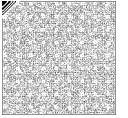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고,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또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을 요청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¹⁾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또는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인권전담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 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권위는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했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마지막 보루인 법원은 심리 등 장시간의 재판을 통해 장애인의 승소를 인정하기도 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소액의 위자료 정도에 그쳤을 뿐, 차별행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1)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 중 일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https://www.ddask.net/dda>, 검색일 : 2023. 3.2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개인과 단체가 총 결집·연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를 결성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제정 및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장애인 관련 법의 입법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단순 의견을 제시하던 단계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용을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아래로부터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이었다.

두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물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또한 자유와 권리의 당연한 주체임을 당사자 스스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선언 주지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별도의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지만,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²⁾

2)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하였으나,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대로 인해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의 입법 논의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차별 및 혐오표현 등에 관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다음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다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 6. 16.)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 8. 9.)이 법제사법위원회 접수·회부되어 있다. 또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청원을 시작한 지 22일만인 지난 2021. 6. 14. 오후 4시 42분 부로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 향후 이들 차별 및 평등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백기·신강협·권오상,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5(1): X-X., 25-26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장벽을 허물어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 보장으로 권리의식도 모든 분야에서 크게 향상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단순한 배려나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 기회 평등, 고용과 근로에서의 비장애인과 진정한 평등,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이동의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자립의지와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전환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개념 정의와 차별시정기구의 별도의 독립적 존재 필요성, 권리구제의 실제적인 수단의 필요성, 강제성 없는 법 조항 등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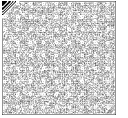
특히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아주 긴급 상황이 아닌 건의 조사 기간만 해도 1~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조사 결과에 의하여 차별행위가 인정되어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서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진정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위를 조사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³⁾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법 제정에 따라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교육,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하며, 심지어 국회가 만든 최저임금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정명령 관련 조항 완화, 관광에서의 차별금지조항 신설, 무인정보단말기 등 관련기기 조항 확대,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등 의미있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면 개정 방향으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반영, 권리구제 방안 확대, 장애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 확대, 새로운 관련 법의 적용, 발달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 명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

한편 장애인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라는 차원을 초월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의 또다른 주요 대상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진일보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과 호주 등 외국에서도

3) 정정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한국법이론실무학회(2021.5.),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285-286쪽.

4) 김성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12-42쪽 참조.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권 확대를 이미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고 있다는 실정을 재고할 때,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⁵⁾

제주지역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체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행정적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지역 차원의 장애인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및 권리 증진 및 차별 규제 등에 대한 활동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도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전남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현재 제주를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 모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조례(또는 '장애인인권보장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⁶⁾

지역 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등 장애인 인권 관련 자치입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인권문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지역사회 삶의 터전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 인권이 보장·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법규적인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적 장치가 구축되고 구축된 조례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지만 지역사회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둘째, 조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행정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인권이라

5) 정정희, 위의 논문, 286쪽.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 검색일: 2023. 3.30.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는 추상적·포괄적·관념적 의미를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많은 과업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조직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보호적, 시혜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향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 인권조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구민들과의 법규적 약속이다.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인권센터가 전국에 7곳으로 제정한 조례가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듯이 그간의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지역사회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조례를 입법화한 의회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와 같은 인권규범에 따라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의 인권전담부서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 기본계획, 감시·구제기구 그리고 인권교육과 인권사업의 홍보와 지원을 담당하는 인권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인권제도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원활한 역할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이 발전할 수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의 표준안을 통해 인권조례가 갖춰야 하는 항목들 즉,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지수개발, 인권전담부서 설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지방정부의 인권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시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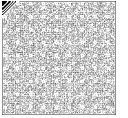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2011년 6월 29일 제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지역에서도 인권침해 및 차별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제12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제14조에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장애인인권위원

7) 박윤근·한은영,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조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2014), 50-51쪽.

8) 위의 논문, 36쪽.



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상임대표는 “조례의 핵심이었던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할 가칭 ‘장애인인권센터’가 제정과정에서 삭제되고 장애인 차별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가칭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실효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했음에 대해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⁹⁾

우선 2개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목적이 상이하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한다면,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기존의 보호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대구, 세종, 울산, 충남, 경북 등 5개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위원회는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장애인 인권조례 이행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내 기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자체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장애인복지기관장, 장애인단체대표, 장애인단체 추천, 장애인시설의 장 등 장애인 관련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나 그 추천 몫으로 구성되고 있다. 독립성 보장, 시민의 참여 보장, 전문성 강화 여부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은 물론 시민의 참여 및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며, 위원회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담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 중 장애인거주시설 1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5%로 나타나고 있고,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6%로

9)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13. 4.), 611-615쪽.



가장 많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법인 및 기관, 단체 대표나 그 추천 몫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정에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처럼 개정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된 위원회의 경우에도 매년 1회 정도의 운영 실적만을 보이고 있다.¹⁰⁾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2018,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에서도 기존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비판해오기는 했었다. 기존의 장애 관련 인권보장, 협의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당사자가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의기구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현 도정의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가 있다. 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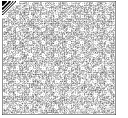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조항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안에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등의 총체적인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되어야 할 조항이다. 인권문제는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수의 결정권자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인권중심의 계획수립은 복지계획보다 상위적 개념으로서의 규정되어야만 조례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¹²⁾가 나타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 인권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

10) 이해경 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12.), 63쪽.

11)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 자료집」,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2022. 5.), 3-10쪽.

12) 광주와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기본계획은 매회 5년 주기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분야를 작성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고, 전북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의 조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삶의 터전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현실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집행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¹³⁾

제주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6·7·8조에서 5년에 한 번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계획에는 ①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 방향에 관한 사항, ②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④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⑤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⑥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⑦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⑧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계획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기초이자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차 기본계획(2016~2020)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장애인 살아가기 좋은 제주'라는 비전으로 수립·시행되었다. 그 뒤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은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그동안의 정책 변화, 장애계의 욕구를 종합하여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 친화적 제주'를 비전으로 제안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기본계획 또한 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권중심의 계획수립이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은 단순히 정책 과제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짜여진 시기별(time-framed) 이행계획과 목표, 그리고 적절한 이행 전략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정책의 연동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¹⁵⁾ 인권의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재구성되어

13) 박윤근·한은영, 앞의 논문, 43-44쪽.

14)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루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재까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이르고 있다.

15)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연동성이 떨어지고 장애인권과 차별 관련 이슈가 정책적 주변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인권중심 의제라기보다 여전히 급여와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권과 관련된 계획은 폭력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교육과정의 정당한 편의, 여성참여 강화 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은 차별 관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제공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부정책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동철 외 13인,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1. 12.), 40쪽.과의 연동성이 떨어져 장애인권과 차별 관련 이슈가 정책적 주변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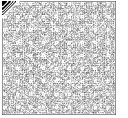
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발효, 탈시설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주거권, 서비스변경신청권 등 장애인도 ‘인권’의 주체로서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기존 지자체의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 계획’은 ‘시혜’와 ‘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과 국가 인권위원회의「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과의 정책적 연관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Action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1차 기본계획은 물론 제2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 및 정책·제도운영 목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¹⁶⁾ 그 내용에 있어서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④공공기관 등의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⑤모·부성권 및 성(性), ⑥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과 그 이행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보장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당초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회복이라는 장애인단체의 설립목적과 중첩되고, 전국적 선례가 없으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이유와 집행부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정에서 그 설치 근거가 되살아났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인권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안의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인권교육, 인권 차별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의거 2017년

16)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급여법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평가하여 이 평가된 욕구에 따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상의 유형과 정도 등을 미리 상세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급여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부당한 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개입하여 그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손상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똑같이 개입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가 손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의 정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남찬선,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회(2009. 5.),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183쪽 각주 18) 재인용.



우리도에 설치 예정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업무와 중복되어 업무 혼선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므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¹⁷⁾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기구로서 인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남, 서울, 경기 등과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다가 2017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처럼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거나, 우리 제주처럼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차별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른 인권센터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설립은 조례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권문제는 여전히 추상적, 전시용 행정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인권센터의 기능·책임·범위·평가·행정체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 또는 단체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의 인권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지역별 ‘사무의 위탁 촉진·관리 조례’ 등에 따라 법률적 실제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뜻한다. 소수의 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의지, 재정자립도, 관계공무원의 역량들로 인한 인권센터의 기능, 예산 축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기능, 책임, 범위, 평가, 행정체계 등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¹⁸⁾

따라서, 기존 장애인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더불어 장애인 차별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이 업무영역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모두 하는 방안도 있고, 개별 프로그램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관리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것인지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지 그리고 그 운영방식(직영·공영·민간 등)과 권한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9. 9.), 3쪽.

18) 박윤근·한은영, 앞의 논문, 47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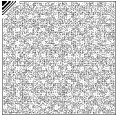
도가니, 지적장애인 노예사건, 원주사랑의집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따라서 전문적인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구조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권리옹호제도가 필요하다(다수인 보호시설의 경우 취약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한국에서의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위협주기, 협박하기, 특권 사용하기, 고립시키기, 경제적 학대, 약이나 개인적 원조·보조장치를 주지 않기, 장애를 비하한 언어적 조롱,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 및 입원시키기 등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인권센터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어온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미국 P&A(Protection & Advocacy) 제도 등 여러 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개별적이고 혼재되어있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17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3년 3월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광역시도에 19곳(경기, 경북북부, 충북, 충북북부), 도합 20곳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사건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지원, 사법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복지지원 등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연구,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기관과 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처리부터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기관으로 분담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학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권익옹호의 본래 개념보다는 업무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¹⁹⁾.

19) 이동석, “다중옹호모델에 따른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유형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장애인복지연구 제13권 제1호, 13쪽.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1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57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49.6%), 일반사례는 2,496건(50.4%)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859건(17.3%), 경기 851건(17.2%), 부산 385건(7.8%), 충북 320건(6.5%) 순으로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기관당 평균 136.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전년도(평균 114.9건)와 비교했을 때 평균 21.8건의 신고가 더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가 46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206건(8.4%), 서울 205건(8.3%), 부산 169건(6.9%), 인천 157건(6.4%)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62건(2.5%)으로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고 광주 80건(3.3%), 세종 87건(3.5%) 등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의심사례 외에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한다. 2021년 신고접수된 일반사례는 2,496건으로 전체 신고(4,957건)의 50.4%를 차지했다. 일반사례 유형을 보면 정보문의가 1,493건(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 541건(21.7%),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293건(11.7%), 장애인차별 사례 169건(6.8%)이었다.

장애인학대는 아동이나 노인학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약 70%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후견 개시, 신변 보호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

구분	신고접수			학대 조사 및 지원			
	계	일반	학대의심	학대 판정	응급 조치	상담 지원	사후 지원
2022	151	71	80(82)	57	12	714	151
2021	126	66	60(62)	26	13	343	177
2020	141	83	58(76)	35	6	372	81
2019	145	92	53(53)	33	4	228	84
2018	94	42	52(52)	27	6	155	15

지난 5년 동안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관심의 확대, 장애인학대 신고 정신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로 많은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학대 피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하기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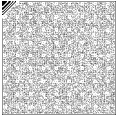
있다. 첫째, 예산 및 인력 부족, 경험 부족, 수행기관의 역량부족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업무영역이 학대 조사 기능에 국한되어 피해자 사후지원, 차별 사례 대응, 기타 인권현안 대응 등 장애인단체에서 기대하는 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위탁기관(복지부 및 자치단체)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경직된 운영(예, 지역 내 장애인권 현안 발생 시 역할 없음. 학대 여부에 대한 소극적 판단과 제한된 개입 등) 등으로 민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접수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세부 유형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가 있다. 2021년 접수된 차별사례는 169건이며 기타사례가 38건(22.5%), 고용사례 34건(20.1%), 교육·시설물 접근사례 각각 17건(10.1%)이었다.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사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은 세부적으로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 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당사자 대응포기, 기타, 지원 대상 아님 등으로 나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사례 10건을 제외하고 총 159건의 차별사례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44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21건(12.4%), 기타 16건(9.5%), 조사 중 해결 15건(8.9%) 등의 순이었다.

제주의 경우 2021년 일반사례 66건 중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 2건(1.2%)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 사건은 제주장애인옹호기관의 수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절차 안내 등 단순 정보제공에 머물러있어, 타 지역기관과 같이 차별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 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등 차별에 따른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래 권익옹호(advocacy)는 당사자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익옹호 활동은 학대로부터의 안전한 보호(protection)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한정하는, 잘못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애초 미국의 P&A가 우리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의 제도적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보호서비스에서 옹호서비스까지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옹호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P&A가 하고 있는 옹호업무까지는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전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



립된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요 기능이었던 차별 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확대로부터 안전한 보호, 차별 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맞춰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학대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까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되는 학대행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된 차별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의 양태가 학대와 차별을 포함하고 있고, 학대는 차별이 극대화된 행위이기 때문이다.²⁰⁾ 즉, 사실상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구별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그 차이에 따라 구분할 필요도 없다. 다만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학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고소 등 형사처벌을 염두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차별 시정 등에 대한 피해자지원을 통해 적극적 개입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존의 분산된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이 가진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학대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위탁 운영 방식의 특성상 제기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²¹⁾ 따라서 타 지자체 장애인차별금지조례와 같이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이 요구된다.

나가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힘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안착이 되기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서도 투쟁해야 할 것이다

20) 김예원,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016), 공익과 인권, 통권 제16호, 224쪽.

21) 김대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2017.9.5.), 제1357호, 4쪽.

제주지역장애인권 현안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08. 4. 11. ~ 202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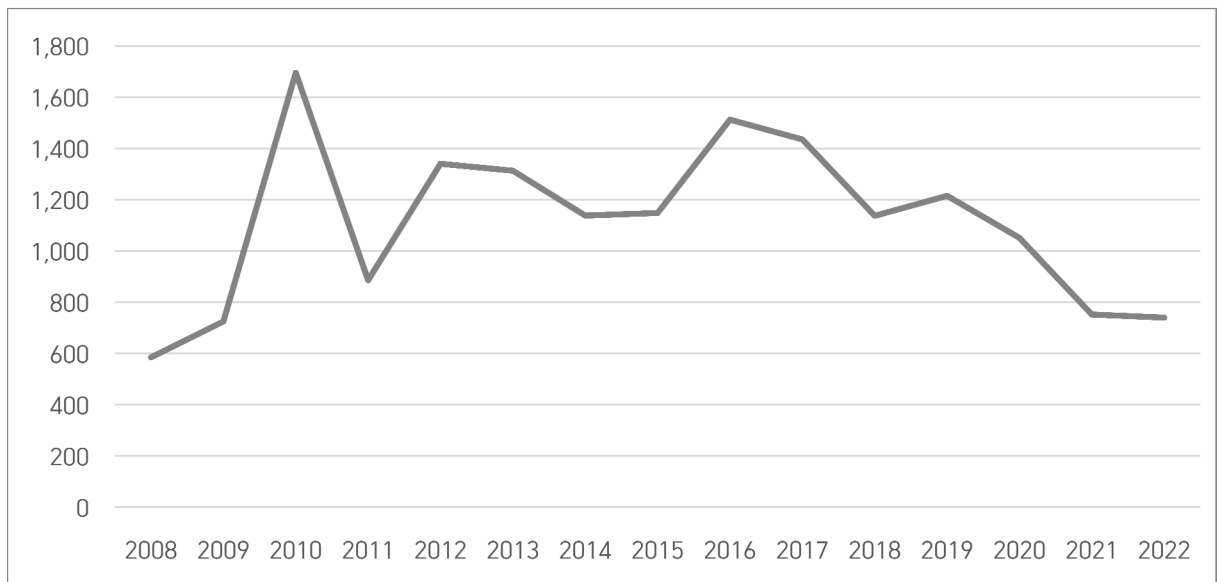
<2023. 3. 28. 기준²²⁾>

I.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장애자별 사건 접수 현황(2008. 4. 11. ~ 2022. 12.)

(단위: 건)

접수년도	합계	2008. 4.1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6,672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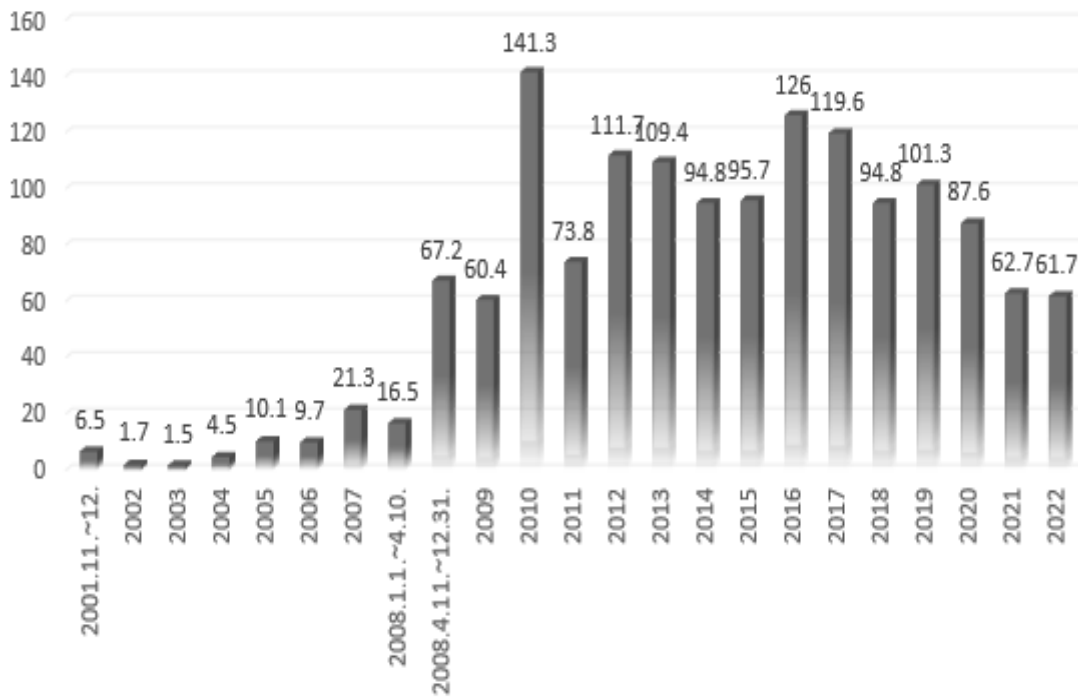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장애차별 사건 접수 추이

22)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시스템 통계보고서(통계연보), 2022년도(2023. 2. 16.마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등’침해’는 제외함

나.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 11. ~ 2022. 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1 (11 ~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 4.10)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 진정 건수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월 평균	6.5	1.7	1.5	4.5	10.1	9.7	21.3	16.5	67.2	60.4	141.3	73.8	111.7	109.4	94.8	95.7	126.0	119.6	94.8	101.3	87.6	62.7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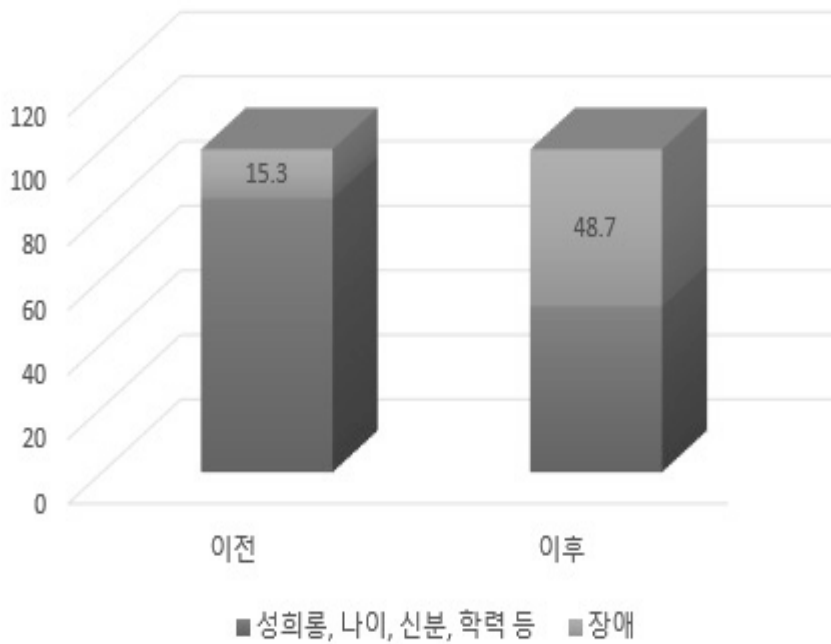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22.12.)

다.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기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8,526	100	21,201	55.0	17,325	45.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 2008. 4. 10.	4,269	100	3,16	84.7	653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 2022. 12. 31.	34,257	100.0	17,585	51.3	16,67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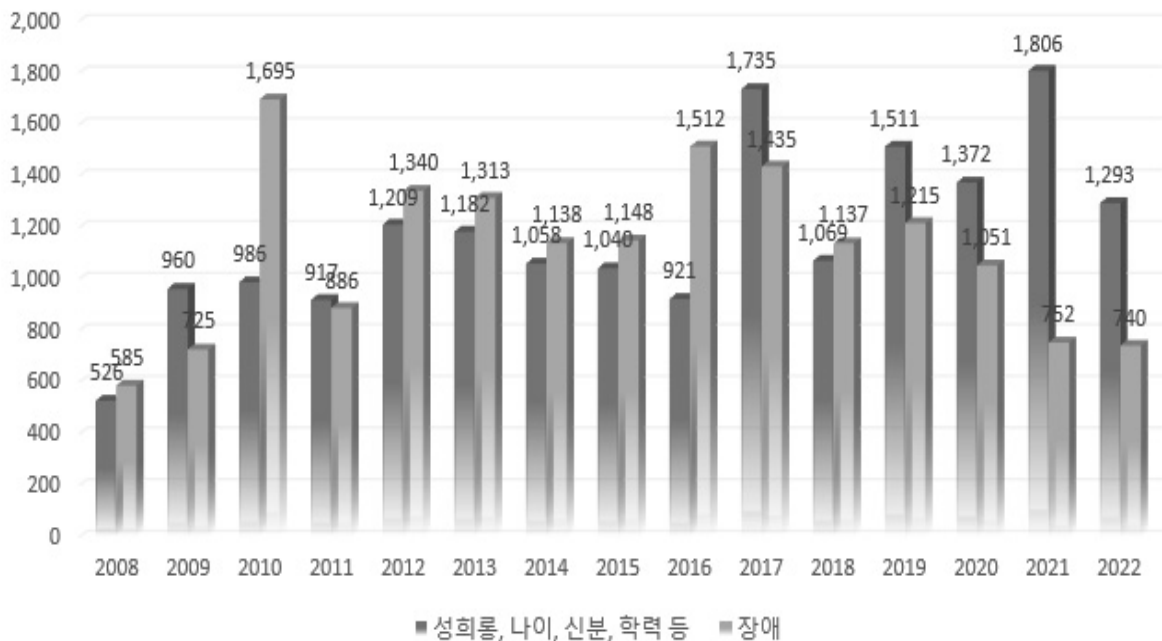


[그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비율(%)

라. 연도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년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4,257	100.0	17,585	51.3	16,672	48.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연도별)	2008. 4. 11. ~	1,111	100.0	526	47.3	585	52.7
	2009	1,685	100.0	960	57.0	725	43.0
	2010	2,681	100.0	986	36.8	1,695	63.2
	2011	1,803	100.0	917	50.9	886	49.1
	2012	2,549	100.0	1,209	47.4	1,340	52.6
	2013	2,495	100.0	1,182	47.4	1,313	52.6
	2014	2,196	100.0	1,058	48.2	1,138	51.8
	2015	2,188	100.0	1,040	47.5	1,148	52.5
	2016	2,433	100.0	921	37.9	1,512	62.1
	2017	3,170	100.0	1,735	54.7	1,435	45.3
	2018	2,206	100.0	1,069	48.5	1,137	51.5
	2019	2,726	100.0	1,511	55.4	1,215	44.6
	2020	2,423	100.0	1,372	56.6	1,051	43.4
	2021	2,558	100.0	1,806	70.6	752	29.4
2022	2,033	100.0	1,293	63.6	740	36.4	



[그림 4]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연도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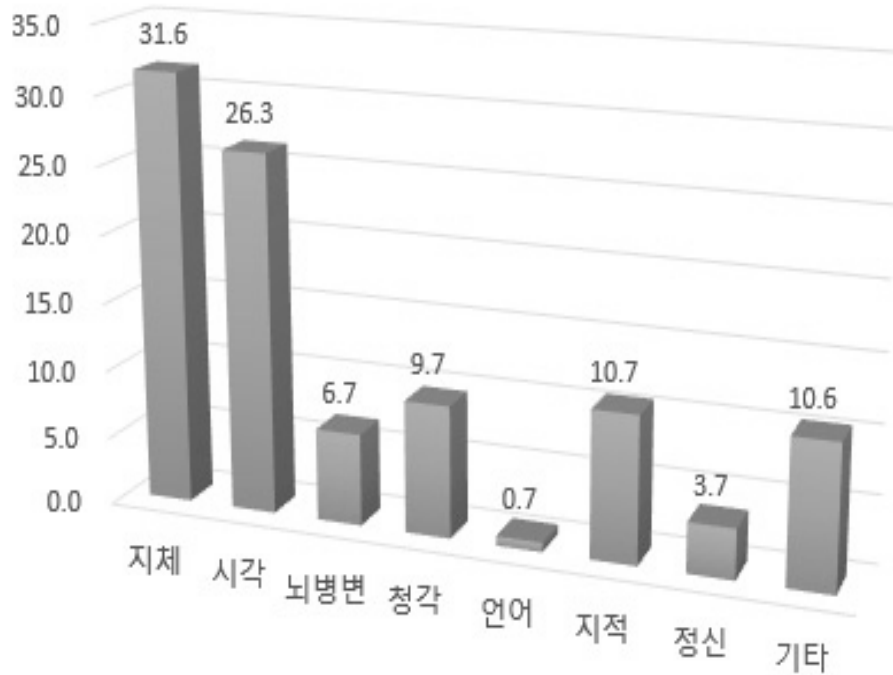
II. 진정사건 접수 세부 현황

가. 장애유형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 4. 11. ~ 2022. 12. 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구분	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발달	정신	기타
합계	계	16,672	5,262	4,391	1,124	1,610	117	1,790	614	1,764
	비율	100.0	31.6	26.3	6.7	9.7	0.7	10.7	3.7	10.6
2008 (4. 11.~)	건수	585	72	85	35	45	1	29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0.2	5.0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11	70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1.5	9.7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8	182	72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0.5	10.7	4.2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8	214	48	48
	비율	100.0	33.5	16.0	6.4	8.1	0.9	24.2	5.4	5.4
2012	건수	1,340	494	192	85	140	13	231	47	138
	비율	100.0	36.9	14.3	6.3	10.4	1.0	17.2	3.5	10.3
2013	건수	1,313	382	299	70	251	7	115	50	139
	비율	100.0	29.1	22.8	5.3	19.1	0.5	8.8	3.8	10.6
2014	건수	1,138	403	290	91	112	13	104	55	70
	비율	100.0	35.4	25.5	8.0	9.8	1.1	9.1	4.8	6.2
2015	건수	1,148	333	440	93	101	5	102	31	43
	비율	100.0	29.0	38.3	8.1	8.8	0.4	8.9	2.7	3.7
2016	건수	1,512	628	329	102	93	7	247	61	45
	비율	100.0	41.5	21.8	6.7	6.2	0.5	16.3	4.0	3.0
2017	건수	1,435	424	580	98	98	12	103	54	66
	비율	100.0	29.5	40.4	6.8	6.8	0.8	7.2	3.8	4.6
2018	건수	1,137	312	429	94	80	14	128	20	60
	비율	100.0	27.4	37.7	8.3	7.0	1.2	11.3	1.8	5.3
2019	건수	1,215	315	295	60	77	5	97	47	319
	비율	100.0	25.9	24.3	4.9	6.3	0.4	8.0	3.9	26.3
2020	건수	1,051	417	352	48	95	6	50	24	59
	비율	100.0	39.7	33.5	4.6	9.0	0.6	4.8	2.3	5.6
2021	건수	752	194	240	29	67	4	66	29	123
	비율	100.0	25.8	31.9	3.9	8.9	0.5	8.8	3.9	16.4
2022	건수	740	195	200	57	58	3	52	17	158
	비율	100.0	26.4	27.0	7.7	7.8	0.4	7.0	2.3	21.4
등록 장애인 구성비 ²³⁾	인원 (명)	2,644,700	1,191,462	251,620	248,308	411,749	23,064	255,207	104,214	159,076
	비율	100.0	45.1	9.5	9.4	15.6	0.9	9.6	3.9	6.0

23)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21. 12. 기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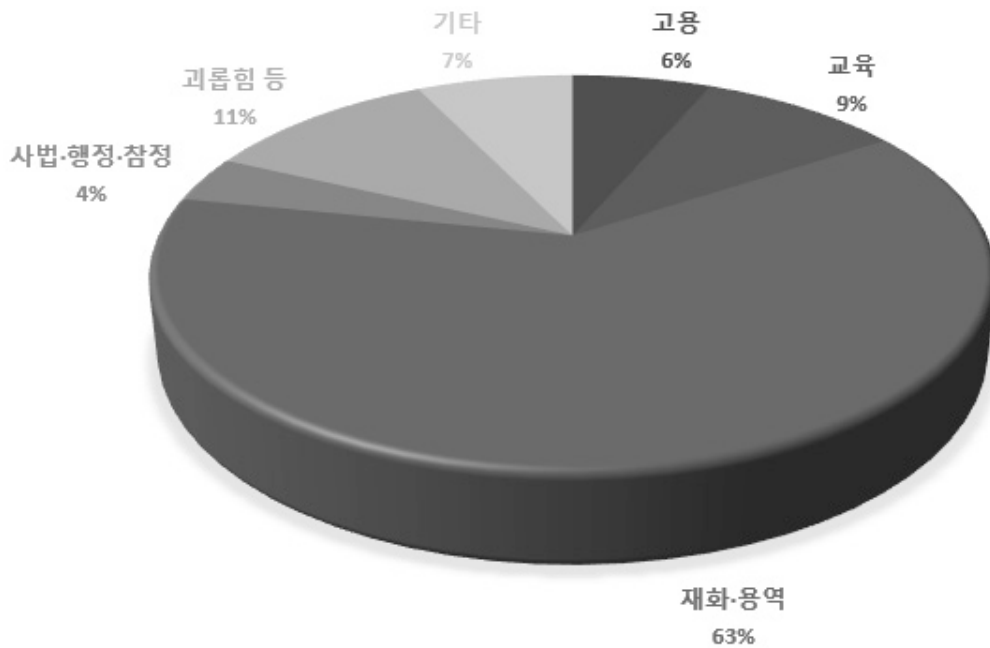
[그림 5]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비율(%) (2008. 4. 11. ~ 2022. 12.)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접수년도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건수	16,672	1,068	1,554	10,413	633	1,803	1,201
	비율	100.0	6.4	9.3	62.5	3.8	10.8	7.2
2008 (4. 11.~)	건수	585	41	61	347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9.4	7.2	6.7
2009	건수	725	69	49	412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5.8	14.5	6.6
2010	건수	1,695	82	55	1,269	39	177	73
	비율	100.0	4.8	3.2	74.9	2.3	10.4	4.3
2011	건수	886	64	62	488	80	105	87
	비율	100.0	7.2	7.0	55.1	9.0	11.9	9.8
2012	건수	1,340	82	97	807	93	115	146
	비율	100.0	6.1	7.2	60.2	6.9	8.6	10.9

접수년도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2013	건수	1,313	75	45	708	71	305	109
	비율	100.0	5.7	3.4	53.9	5.4	23.2	8.3
2014	건수	1,138	94	67	678	61	121	117
	비율	100.0	8.3	5.9	59.6	5.4	10.6	10.3
2015	건수	1,148	67	55	734	38	123	131
	비율	100.0	5.8	4.8	63.9	3.3	10.7	11.4
2016	건수	1,512	56	536	644	62	89	125
	비율	100.0	3.7	35.4	42.6	4.1	5.9	8.3
2017	건수	1,435	79	92	1,002	29	94	139
	비율	100.0	5.5	6.4	69.8	2.0	6.6	9.7
2018	건수	1,137	55	61	786	34	113	88
	비율	100.0	4.8	5.4	69.1	3.0	9.9	7.7
2019	건수	1,215	80	72	734	29	201	99
	비율	100.0	6.6	5.9	60.4	2.4	16.5	8.1
2020	건수	1,051	78	86	805	0	82	0
	비율	100.0	7.4	8.2	76.6	0.0	7.8	0.0
2021	건수	752	72	91	501	0	88	0
	비율	100.0	9.6	12.1	66.6	0.0	11.7	0.0
2022	건수	740	74	125	498	0	43	0
	비율	100.0	10.0	16.9	67.3	0.0	5.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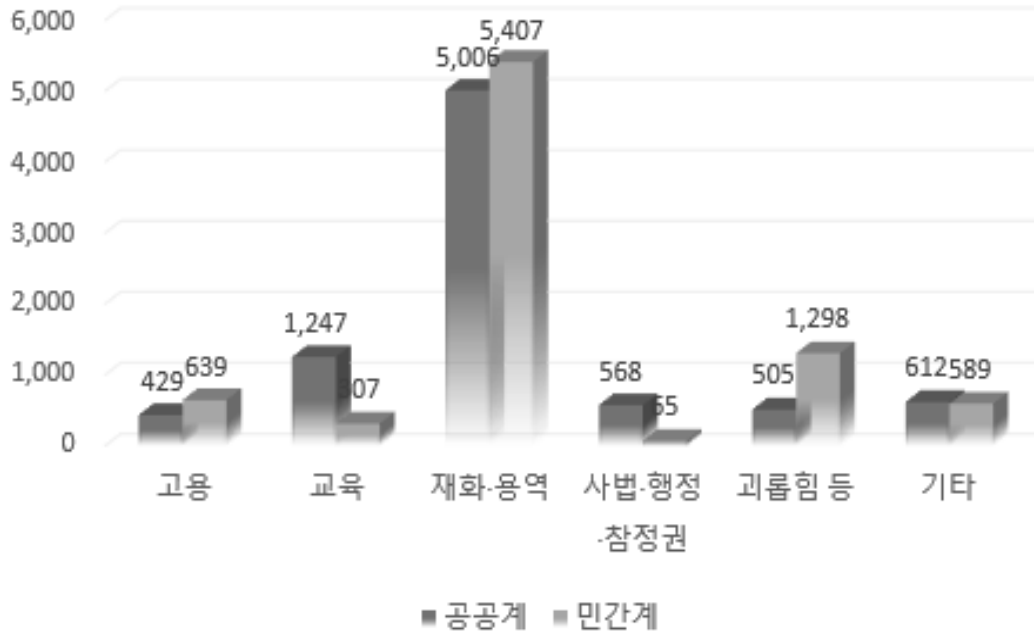


[그림 6]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22.12.31.)

다. 차별영역별, 피진정인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접수년도	접수건수	피진정인 구분	비율 (%)	계 (건수)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16,672	공공계	8,367	50	429	1,247	5,006	568	505	612
		민간계	8,305	50	639	307	5,407	65	1,298	589
2008 (4. 11.~)	585	공공	30	175	12	23	105	25	3	7
		민간	70	410	29	38	242	30	39	32
2009	725	공공	33	242	16	27	129	36	19	15
		민간	67	483	53	22	283	6	86	33
2010	1,695	공공	68	1,150	26	39	978	34	33	40
		민간	32	545	56	16	291	5	144	33
2011	886	공공	55	486	18	49	267	77	22	53
		민간	45	400	46	13	221	3	83	34
2012	1,340	공공	52	701	34	90	387	90	22	78
		민간	48	639	48	7	420	3	93	68
2013	1,313	공공	33	438	37	39	215	68	26	53
		민간	67	875	38	6	493	3	279	56
2014	1,138	공공	34	390	28	47	196	56	17	46
		민간	66	748	66	20	482	5	104	71
2015	1,148	공공	40	455	21	48	247	38	30	71
		민간	60	693	46	7	487	0	93	60
2016	1,512	공공	61	921	29	530	212	61	23	66
		민간	39	591	27	6	432	1	66	59
2017	1,435	공공	57	820	27	85	575	27	22	84
		민간	43	615	52	7	427	2	72	55
2018	1,137	공공	44	501	22	49	307	29	49	45
		민간	56	636	33	12	479	5	64	43
2019	1,215	공공	56	676	52	62	338	27	143	54
		민간	44	539	28	10	396	2	58	45
2020	1,051	공공	64	676	47	62	533	0	34	0
		민간	36	375	31	24	272	0	48	0
2021	752	공공	58	435	29	40	324	0	42	0
		민간	42	317	43	51	177	0	46	0
2022	740	공공	41	301	31	57	193	0	20	0
		민간	59	439	43	68	305	0	2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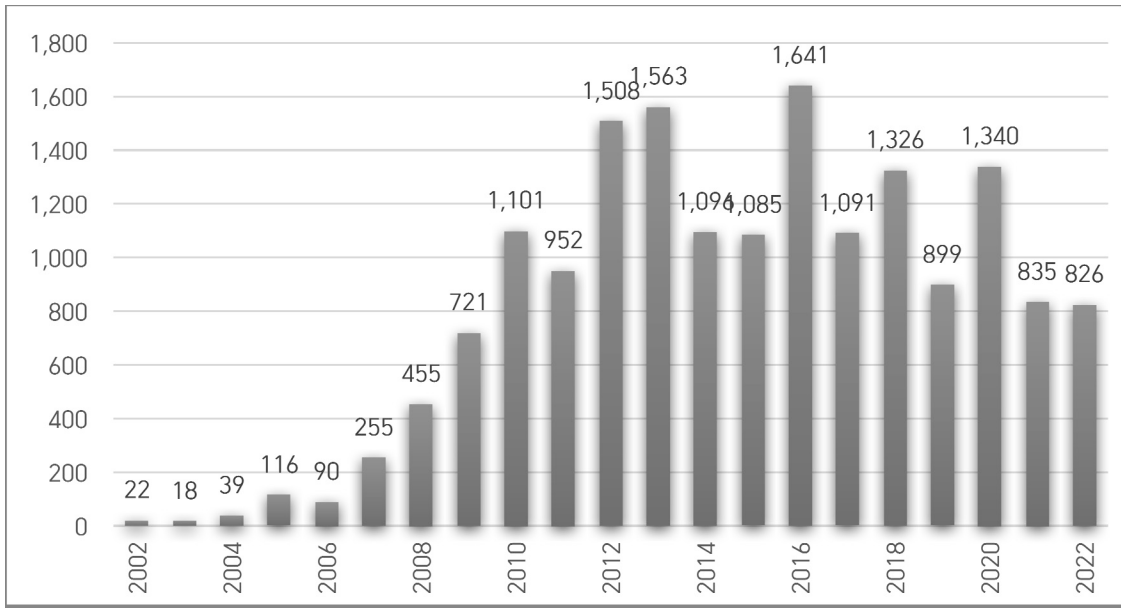
[그림 7] 차별영역별, 피진정인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22.12.31.)

III. 진정사건 처리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22.12.31.)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7	1,215	1,051	752	740
처리	-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1	1,091	1,326	899	1,340	835	826	



[그림 8]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22.12.31.)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 결***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총계	16,399	9,416	5,563	830	5	446	4,282	3,853	6,903 (4,852)	20	60	
구성비 (%)	100	100.0	59.1						40.9			
			57.4							42.1	0.1	0.4
2008년	413	243	156	22	0	12	122	87	169 (88)	1	0	
구성비 (%)	100	100	64.2						35.8			
			58.8							40.9	0.2	0.0
2009년	721	419	226	10	0	47	169	193	292 (181)	4	6	
구성비 (%)	100	100	53.9						46.1			
			58.1							40.5	0.6	0.8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 (취하)	조사 증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조정*	합의종결 **	조사중해 결 ***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0년	1,101	549	374	28	1	56	289	175	531 (241)	6	15
구성비 (%)	100	100	100	7.5	0.3	15.0	77.3				
			68.1					31.9			
		49.9						48.2	0.5	1.4	
2011년	952	637	378	124	0	32	222	259	310 (160)	1	4
구성비 (%)	100	100	100	32.8	0.0	8.5	58.7				
			59.3					40.7			
		66.9						32.6	0.1	0.4	
2012년	1,508	994	485	116	0	21	348	509	512 (392)	1	1
구성비 (%)	100	100	100	23.9	0.0	4.3	71.8				
			48.8					51.2			
		65.9						34.0	0.1	0.1	
2013년	1,563	895	524	29	0	79	416	371	667 (371)	0	1
구성비 (%)	100	100	100.0	5.5	0.0	15.1	79.4				
			58.5					41.5			
		57.3						42.7	0.0	0.1	
2014년	1,096	622	294	17	1	61	215	328	466 (359)	3	5
구성비 (%)	100	100	100	5.8	0.3	20.7	73.1				
			47.3					52.7			
		56.8						42.5	0.3	0.5	
2015년	1,085	575	323	17	0	19	287	252	504 (402)	0	6
구성비 (%)	100	100	100	5.3	0.0	5.9	88.9				
			56.2					43.8			
		53.0						46.5	0.0	0.6	
2016년	1,641	637	411	19	3	29	360	226	997 (851)	0	7
구성비 (%)	100	100	100	4.6	0.7	7.1	87.6				
			64.5					35.5			
		38.8						60.8	0.0	0.4	
2017년	1,091	716	490	71	0	21	398	226	371 (270)	0	4
구성비 (%)	100	100	100	14.5	0.0	4.3	81.2				
			68.4					31.6			
		65.6						34.0	0.0	0.4	
2018년	1,326	786	547	28	0	11	508	239	538 (375)	1	1
구성비 (%)	100	100	100	5.1	0.0	2.0	92.9				
			69.6					30.4			
		59.3						40.6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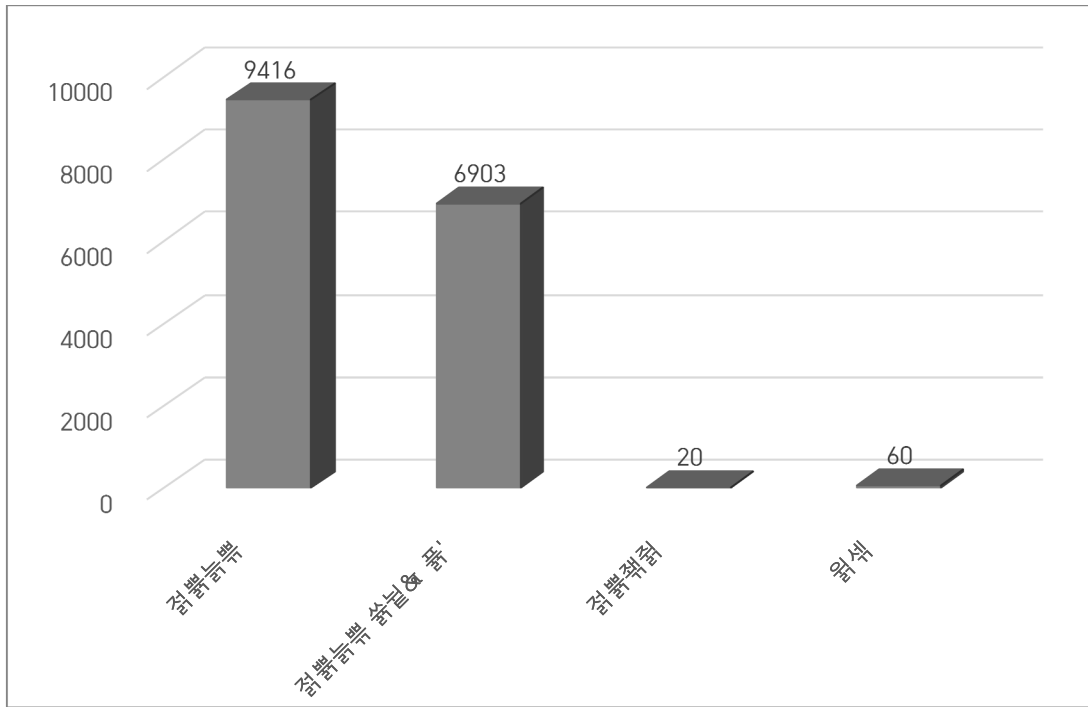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 (취하)	조사 증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조정*	합의종결 ^{**}	조사중해 결 ^{***}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9년	899	406	204	67	0	14	123	202	492 (386)	0	1
구성비 (%)	100	100	100	32.8	0.0	6.9	60.3				
			50.2					49.8			
		45.2						54.7	0.0	0.1	
2020년	1,340	985	715	185	0	18	512	270	354 (268)	1	0
구성비 (%)	100	100	100	25.9	0.0	2.5	71.6				
			72.6					27.4			
		73.5						26.4	0.1	0.0	
2021년	835	448	216	50	0	17	149	232	383 (264)	0	4
구성비 (%)	100	100	100	23.1	0.0	7.9	69.0				
			48.2					51.8			
		53.7						45.9	0.0	0.5	
2022년	828	504	220	47	0	9	164	284	317 (244)	2	5
구성비 (%)	100	100	100	21.4	0.0	4.1	74.5				
			43.7					56.3			
		60.9						38.3	0.2	0.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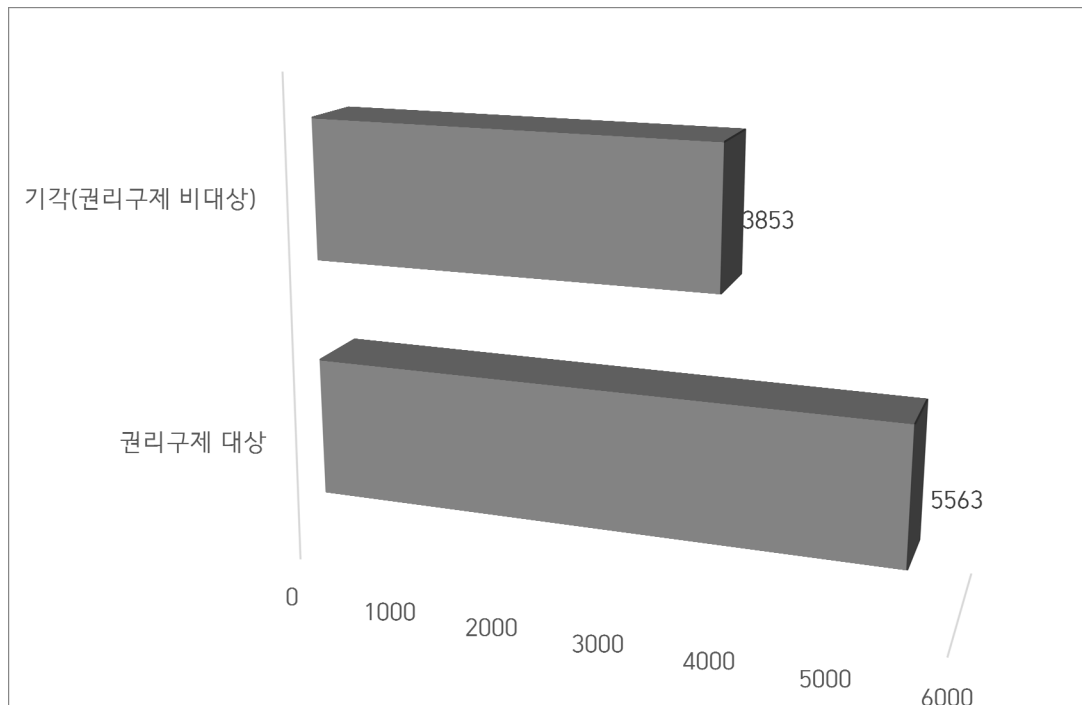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예비조사 또는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각하, 기각 처리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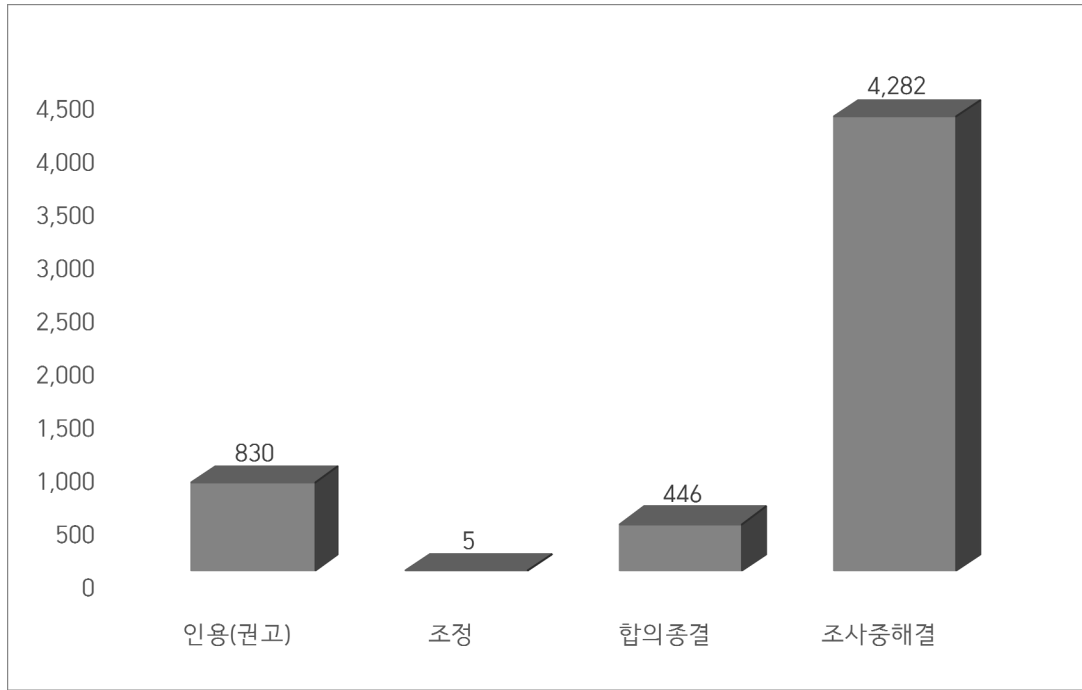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6,399	9,416	5,563	830	5	446	4,282	3,853	6,903	20
	비율(%)	100	100	59.1				40.9			
			57.4						42.1	0.1	0.4
고용	건수	1,046	499	228	45	0	50	133	271	541	3
	비율(%)	100	100	45.7				54.3			
			47.7						51.7	0.3	0.3
교육	건수	1,495	588	379	53	0	45	281	209	904	0
	비율(%)	100	100	64.5				35.5			
			39.3						60.5	0.0	0.2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재화· 용역	건수	10,231	6,709	4,107	609	5	240	3,253	2,602	3,496	9
	비율(%)	100	100	61.2				38.8			
			65.6						34.2	0.1	0.2
사법· 행정 /참정권	건수	635	361	192	56	0	4	132	169	272	1
	비율(%)	100	100	53.2				46.8			
			56.9						42.8	0.2	0.2
괴롭힘 등	건수	2,992	1,259	657	67	0	107	483	602	1,690	7
	비율(%)	100	100	52.2				47.8			
			42.1						56.5	0.2	1.2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예비조사 또는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각하,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22.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권고 사건 수	830	45	53	609	56	67

IV.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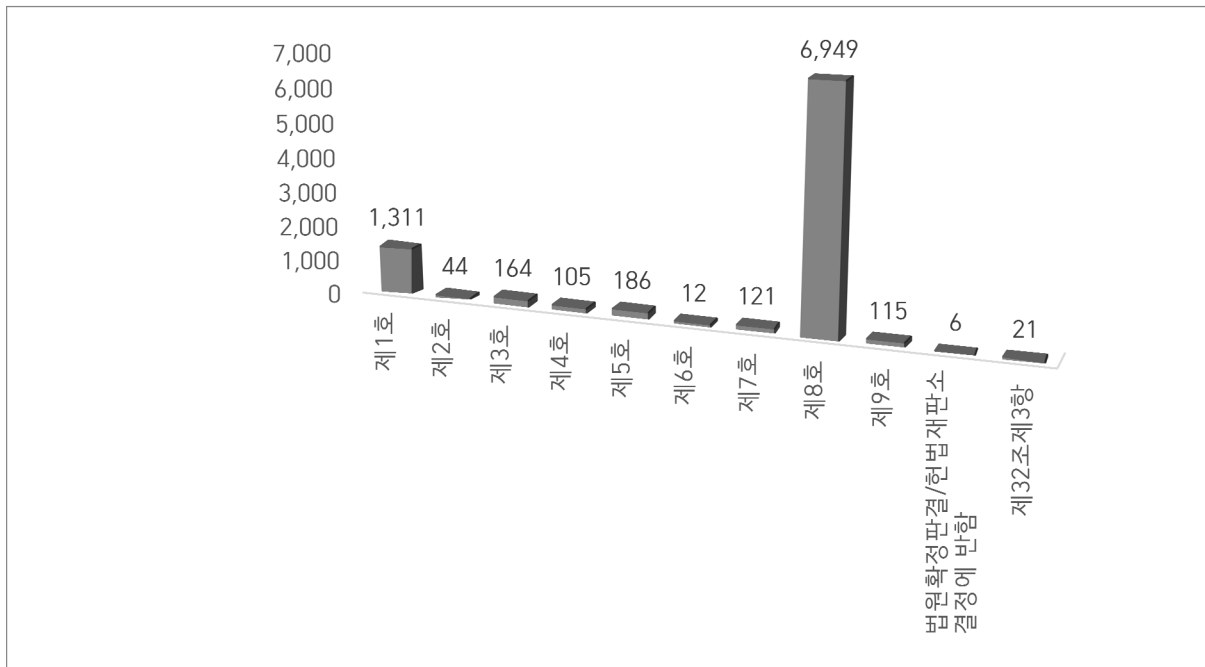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22.12.31.)

(단위: 건, %)

종료년도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 판결/헌법 재판소 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합계	9,034	1,311	44	164	105	186	12	121	6,949	115	6	21
구성비(%)	100.0	14.5	0.5	1.8	1.2	2.1	0.1	1.3	76.9	1.3	0.1	0.2
2008	221	54	1	6	11	2	1	2	139	5	0	0
구성비(%)	100.0	24.4	0.5	2.7	5.0	0.9	0.5	0.9	62.9	2.3	0.0	0.0
2009	353	56	0	9	5	14	1	10	238	19	1	0
구성비(%)	100.0	15.9	0.0	2.5	1.4	4.0	0.3	2.8	67.4	5.4	0.3	0.0
2010	663	227	2	10	19	16	0	6	369	13	1	0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0.0	0.9	55.7	2.0	0.2	0.0
201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0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0.0
2012	615	62	3	14	9	16	4	9	494	3	0	1
구성비(%)	100.0	10.1	0.5	2.3	1.5	2.6	0.7	1.5	80.3	0.5	0.0	0.2
2013	755	215	5	37	2	20	0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0.0	0.8	60.8	1.2	0.1	0.1
2014	560	52	3	8	11	17	1	2	452	10	0	4
구성비(%)	100.0	9.3	0.5	1.4	2.0	3.0	0.2	0.4	80.7	1.8	0.0	0.7
2015	663	49	1	8	7	14	1	12	561	8	0	2
구성비(%)	100.0	7.4	0.2	1.2	1.1	2.1	0.2	1.8	84.6	1.2	0.0	0.3
2016	1,199	101	12	11	4	16	0	3	1,048	3	0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3	0.0	0.3	87.4	0.3	0.0	0.1
2017	634	60	1	11	7	13	1	5	529	6	0	1
구성비(%)	100.0	9.5	0.2	1.7	1.1	2.1	0.2	0.8	83.4	0.9	0.0	0.2
2018	780	127	1	13	4	6	0	8	614	5	0	2
구성비(%)	100.0	16.3	0.1	1.7	0.5	0.8	0.0	1.0	78.7	0.6	0.0	0.3
2019	564	58	10	6	5	15	1	7	458	3	0	1
구성비(%)	100.0	10.3	1.8	1.1	0.9	2.7	0.2	1.2	81.2	0.5	0.0	0.2

종료년도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 판결/헌법 재판소 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2020	762	46	1	14	5	4	1	10	675	5	0	1
구성비(%)	100.0	6.0	0.1	1.8	0.7	0.5	0.1	1.3	88.6	0.7	0.0	0.1
2021	466	62	1	4	5	12	0	26	345	8	0	3
구성비(%)	100.0	13.3	0.2	0.9	1.1	2.6	0.0	5.6	74.0	1.7	0.0	0.6
2022	418	48	0	6	7	4	0	8	340	1	0	4
구성비(%)	100.0	11.5	0.0	1.4	1.7	1.0	0.0	1.9	81.3	0.2	0.0	1.0

-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1,224건
-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그림 12]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22.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인 쇄 | 2023년 4월

| 발 행 | 2023년 4월

| 발 행 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 주 소 | (352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2층

| 전 화 | (064) 758-6080

| 팩 스 | (064) 726-1331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959-4-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주지역 장애인권 현안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